





보건복지부		보	도	줃	남고 자료
배 포 일	2020. 3. 20. / (총 5매)		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괴		기초생활보장과
과 장	설 예 승		전	화	044-202-3051
담 당 자	최 종	천	긴	ᆠ[	044-202-3058

##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!

- 재산기준 완화. 지원횟수 제한 페지.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-
-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, 휴·폐업 등 위기 사유\*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\*\*를 적극 보호 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,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(총 3,656억 원),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.
  - \* 위기사유 : 실직, 휴·폐업, 중한 질병·부상 등(긴급복지지원법 제2조, 시행규칙 제1조의2,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)
  - \*\*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 (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) (재산) 대도시 188백만 원, 중소도시 118백만 원,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(금융재산) 500만 원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)
- □ 이에 따라 △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, △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, △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.
  - (재산기준)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.
    - 이는 지역별로 3,500만~6,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%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\*가 예상된다.









- \* 대도시 188→257백만 원(36.7%↑), 중소도시 118→160백만 원(35.6%↑), 농어촌 101→136백만 원(34.6%↑)
- \* 예시) 대구광역시의 ○○○씨는 재산이 2억 원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,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

#### < 지역별 재산 차감액 >

구분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기본재산액	6,900만 원	4,200만 원	3,500만 원

- (금융재산기준)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%에서 100%로 확대한다.
  -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~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.

### <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>

(단위 : 원)

				- , ,	•	•	,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기준중위소득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	7,389,715
생활준비금 65%(A)	1,142,000	1,945,000	2,516,000	3,087,000	3,658,000	4,229,000	4,803,000
100% 확대 시 효과액	615,194	1,046,980	1,354,577	1,662,174	1,969,771	2,277,368	2,586,715

- (위원회 활성화)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\*를 적극 활용하여,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  - \* 공무원, 사회보장 전문가, 비영리민간단체·기초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
- (지원횟수 제한 폐지)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,
  -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.









- □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,656억원(추경 2,000억 원 포함)을 재원으로 하며,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.
  - 실직, 휴·폐업, 질병·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,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,
    -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·재산기준\*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, 생계비 및 의료비,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< 별첨 >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











# 별첨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

- 지원대상 :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
- 위기 사유(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,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, 시행규칙 제1조의 2)
  - 1.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- 2.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- 3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- 4.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- 5.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  - 6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**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**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
  - 7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- 8.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 임차료 체납 등
  - 9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  -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,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,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 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- O 소득·재산기준(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, 적정성 심사 시 판단)
-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원/월	1,317,896	2,243,985	2,902,933	3,561,881	4,220,828	4,879,776	5,542,286

- 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. 1인 증가시마다 662.510원씩 증가(8인 가구 6.204.796원)
- (재산) 대도시 188백만원, 중소도시 118백만원,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
- ※ (기존) 재산 차감기준 없음 ⇒ (변경) 재산 차감기준 신설(3,500~6,900만원)
- (금융재산) 500만원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)
- ※ (기존)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차감 ⇒ (변경) 100% 차감
- **지원내용**(4인 기준/월) : 생계(123만원), 의료(1회 300만원), 주거(64.3만원), 복지시설이용(145만원)
  - \*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, 연료비(10월~3월)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 등 지원









#### □ 긴급지원 지원금액

① 생계지원

(원/월)

가구구성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454,900	774,700	1,002,400	1,230,000	1,457,500	1,685,000

※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16,500원씩 추가 지급

② 의료지원 한도액: 300만원 이내

③ 주거지워 한도액

(원/월)

가구구성원 수 지 역	1~2 인	3~4인	5~6인
대 도 시	387,200	643,200	848,600
중 소 도 시	290,300	422,900	557,400
농 어 촌	183,400	243,200	320,300

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

(원/월)

입소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535,900	914,200	1,182,900	1,450,500	1,719,200	1,987,700

※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78,000원씩 추가 지급

⑤ 교육지원 금액

(원/분기)

구 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지원금액	221,600	352,700	432,200원 및 수업료·입학금

⑥ 그 밖의 지원 금액

(원/월)

지원종류	연료비	해산비	장제비	전기요금
지원금액	98,000	700,000	800,000	500,000 이내

※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



